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01호 2021. 5. 18.(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1-656호)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69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예 천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 면 적 : 195,000m²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1년 5월 24일 ~ 2021년 6월 12일(20일간)
- 공람장소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관한 내용

3. 합동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년 05월 31일(월) 15:00
- 장 소 :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설명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관한 내용

4.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제출기간 : 열람기한 내
- 제출방법 : 서면제출
- 제출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관한 의견

5. 기타사항

-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팀(☎054-650-6232)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예천군수		
관련지번 (소유지번)			
의견제출자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소유자와의 관계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제 출 의 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주민의견 제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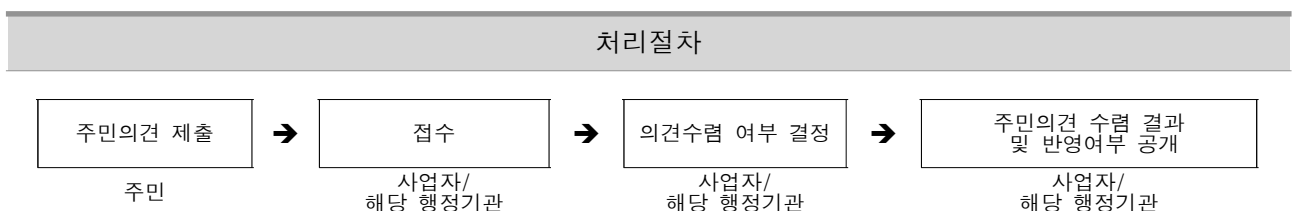
사업명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사업자	예천군수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년 2월 2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예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의 용어 정비 및 관련법 변경(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표 정비
(안 별표1)

- 회계에 관한 증명 관련 : 삭제 1건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관련 : 삭제 2건
- 소음 · 진동 ·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관련 : 삭제 1건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 신고 · 허가 관련 : 변경 2건
- 양식업 면허 · 허가 신청 관련 : 신설 8건
- 낚시터업 허가 · 등록 관련 : 신설 3건
- 관상어양식업 신고 관련 : 신설 1건
- 부서 명칭 관련 : 변경 3건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879,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padohoya@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조례 제2021- 호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등록,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을 “등록·지정·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등”을 “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소	민원서류명			
새마을경제과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통	1,000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20,000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10,000	
재무과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확인			
	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건	800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300	
종합민원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소	민 원 서 류 명			
종합민원과	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법인	1건	30,000	
	2) 개인	1건	20,000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문화관광과	1.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허가 · 등록 · 신고	1건	20,000	
	나. 허가 · 등록 ·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	
	2. 공연장 등록	1건	10,000	
	3.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4. 유원시설 허가 및 신고			
	가. 종합유원시설업			
	1)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1)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다. 유원시설업(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제외)			
	1) 신고	1건	30,000	
	2)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라.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5. 영화업			
	가. 신고	1건	20,0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소	민원서류명			
문화관광과	나.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6. 영화상영관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10,000	
	7.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가. 신고	1건	2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5,000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가. 신고	1건	2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10. 노래연습장업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5,000	
	1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환경관리과	1.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농정과	1.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	1통	300	
	2) 토지도면	1통	3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실과소	민 원 서 류 명			
농정과	3) 건물도면	1통	300	
	나. 공부 및 공부부분 열람			
	1) 기본료	기간당	100	
	2) 초과료	10분당	100	
	다.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	
	2.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3. 농약판매업 등록	1건	10,000	
	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축산과	1.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신고·허가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 정치망어업	1건	9,000	
	2) 공동어업	1건	7,500	
	나.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라. 내수면어업연장허가신청 (정치망어업·공동어업)	1건	5,000	
	2. 양식업 면허·허가 신청			
	가. 양식업 면허신청			
	1) 양식업 면허	1건	5,000	
	2) 내수면 양식업 면허	1건	9,000	
	3)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1건	3,000	
	4)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	
	나. 육상해수양식업 및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 육상해수양식업 및 내수양식업허가	1건	4,000	
	2)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건	1,500	
	3) 허가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	

축산과	4) 허가양식업 휴업 및 재개 신고	1건	1,000	
	3.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가. 낚시터업 허가(변경) 신청	1건	5,000	
	나. 낚시터업 등록(변경) 신청	1건	5,000	
	다. 낚시터업 승계사실 신고	1건	5,000	
	4.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1. 건설 및 하천 허가 관련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1,000	
	나.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마.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1건	점용료의 1/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	
	다.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1건	점용료의 1/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1,500
	라.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실과단소	민 원 서 류 명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사.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	
	자.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1,000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카.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타. 체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	1건	1,500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	1건	1,500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바.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보건소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2.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1건	20,000	
	3.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가.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나. 양도 · 양수신고	1건	10,000	
	4. 부속 의료기관(의료법 제35조제1항)			
	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체육사업소	1.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가. 신고	1건	3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 록·지정·확인, 입찰참가등록, <u>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등</u> (이 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 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등 <u>록·지정·확인</u> ----- ----- ----- ----- ----- -----.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예 천군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 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 는 신고서 <u>입찰참가 신청서, 수 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u>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한 때에 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 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 ----- ----- ----- 등----- ----- ----- ----- ----- ----- -----.
	②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 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 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 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 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 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 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 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 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 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 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 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폐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 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 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 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 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 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 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 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 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권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권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 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 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 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 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 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 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 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 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 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 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